

부속서 3.4

관세 철폐

제 1 절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에 대한 관세

1.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즉시”, “5년”, “7년”, “9년”, “10년” 그리고 “16년”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철폐된다.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유형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7년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9년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유형	발효일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17.1.1	18.1.1	19.1.1	20.1.1
16년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2.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TQ(1)”, “TQ(2)”, “TQ(3)”, “TQ(4)”, “TQ(5)”, “TQ(6)”, 그리고 “TQ(7)”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 관세할당은 부록2의 제2절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적용된다.

3.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DDA”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은 세계무역기구의 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이 종료된 후에 협상한다.

4.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10년 S”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칠레산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계획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적용된다.¹⁾

매년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 특혜 대우는 11월 1일부터 4월 30일 사이에 수입되는 포도에만 적용된다.

유형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10년 S	9.1%	18.2 %	27.3 %	36.4 %	45.5 %	54.5 %	63.6 %	72.7 %	81.8 %	90.9 %	100%

5. 부록 2(한국의 관세철폐계획)에 “E”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한국의 철
 레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지 않는다.

제 2 절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에 대한 관세

1. 부록 1(칠레의 관세철폐계획)에 “즉시”, “3년”, “5년”, “7년”, “10년” 그리고 “13년”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칠레의 한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철폐된다.

연간 관세 감축 백분율

유형	발효일	05.1.1	06.1.1	07.1.1	08.1.1	09.1.1	10.1.1	11.1.1	12.1.1	13.1.1	14.1.1
즉시	100%										
3년	25%	50%	75%	100%							
5년	16.7%	33.3%	50%	66.7%	83.3%	100%					
7년	12.5%	25%	37.5%	50%	62.5%	75%	87.5%	100%			
10년	9.1%	18.2%	27.3%	36.4%	45.5%	54.5%	63.6%	72.7%	81.8%	90.9%	100%

유형	발효일	10.1.1	11.1.1	12.1.1	13.1.1	14.1.1	15.1.1	16.1.1	17.1.1
13년	0.0%	12.5%	25.0%	37.5%	50.0%	62.5%	75.0%	87.5%	100%

2. 부속서 1(칠레의 관세철폐계획)에 “E” 유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칠레의 한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철폐되지 않는다.